

수원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가합12886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대성

**피고**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변론 종결**2024. 5. 1.

**판결 선고**2024. 6. 5.

## 주 문

1. D과 피고 B 사이에 2020. 1. 2. 체결된 194,184,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194,18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D과 피고 B 사이에, 2019. 7. 30. 체결된 100,000,000원의, 2019. 9. 2. 체결된

39,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D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9. 10. 2. 체결된 83,000,000원의, 2019. 10. 2. 체결된 10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8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화장품 제조·도소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2) 피고 B는 화장품 판매 및 도소매업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자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의 전 배우자인 D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G'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다.
- 3) 피고 B는 1997. 11. 17. D과 혼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중, 2020. 3. 9. D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20. 8. 11. 조정성립에 따라 확정되었다.

#### 나. 원고의 D에 대한 판결금 채권

-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7. 16.부터 2019. 12. 27.까지 D에게 대여금 합계 838,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율 월 5%(제2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이율 월 1%)의 비율로 대여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대여금' 등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

|   |              |       |       |             |
|---|--------------|-------|-------|-------------|
| 1 | 2019. 7. 16. | 원고    | D     | 200,000,000 |
| 2 | 2019. 7. 30. | 원고(E) | 피고 B  | 100,000,000 |
| 3 | 2019. 9. 2.  | 원고    | D     | 55,000,000  |
| 4 | 2019. 10. 2. | 원고(H) | 피고 회사 | 83,000,000  |

|    |               |       |       |             |
|----|---------------|-------|-------|-------------|
| 1  | 2019. 7. 16.  | 원고    | D     | 200,000,000 |
| 5  | 2019. 10. 2.  | 원고(I) | 피고 회사 | 100,000,000 |
| 6  | 2019. 12. 27. | 원고(E) | D     | 300,000,000 |
| 합계 | 838,000,000   |       |       |             |

2) 원고는 2020. 8. 27. 'D, 피고 B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G, F,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으므로, D, 피고 B,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D, 피고 B,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0616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1. 12. 24. D에 대하여 '원고에게 693,630,311원과 그중 596,097,297원에 대하여는 2019.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나2002740호), 위 항소심 법원은 2022. 7. 20. D에 대하여 '원고에게 783,723,671원 및 그중 685,543,703원에 대하여는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4)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다263516호), 2022. 11. 17.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2. 11. 18.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 **다. D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 등**

1) D은 직접 또는 원고를 통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7. 30.부터 2020. 1. 2.까지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금원 지급행위' 등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라고 한다).

|   |              |       |                        |             |
|---|--------------|-------|------------------------|-------------|
| 1 | 2019. 7. 30. | 원고(E) | 피고 B(F)신한은행(계좌번호 1 생략) | 100,000,000 |
| 2 | 2019. 9. 2.  | D     | 피고 B(F)우리은행(계좌번호 2 생략) | 39,000,000  |
| 3 | 2019. 10. 2. | 원고(H) | 피고 회사                  | 83,000,000  |
| 4 | 2019. 10. 2. | 원고(I) | 피고 회사                  | 100,000,000 |
| 5 | 2020. 1. 2.  | D     | 피고 B(F)우리은행(계좌번호 2 생략) | 194,184,000 |

2) 피고 B는 2020. 3. 9. 인천 서구 J 대 450.6m<sup>2</sup> 및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신청한 2020. 3. 30.경에는 D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고, 늦어도 관련사건의 1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D의 무자력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23. 3. 15.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2카단101819호로 2020. 3. 30.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D와 피고 B가 피고 회사를 포함한 G, F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위 각 회사의 운영 자금이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지출하는 등 피고들의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당시 또는 관련사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와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를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채무자인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2022. 4. 12.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2022. 4. 21.부터 2022. 4. 25.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으면서 비로소 D의 무자력 상태를 알게 되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기판력 저촉의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2020. 8. 27. D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위 대여금반환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1) 전에 제기된 소(이하 '전소'라 한다)와 후에 제기된 소(이하 '후소'라 한다)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관계에 있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게 되어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련사건의 소송물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지급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청구권이므로 두 소송의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 **4.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가액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이 사건 각 금원지급 사해행위취소청구 판단기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한다.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그 각 재산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3금원 지급행위와 이 사건 제4금원 지급행위는 모두 원고가 2019. 10. 2. 피고 회사에 송금한 것으로 그 송금일, 송금방법, 수취인이 동일하므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한다.

3) 한편, 이 사건 제1, 2, 5금원 지급행위는 수취인이 피고 B로 동일하나, 각 지급행위 사이에 1개월 또는 5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이 사건 제1, 2금원 지급행위의 동기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제5금원 지급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금원 지급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 특별한 연관관계를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에 관하여는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2019. 7. 16.부터 2019. 12. 27.까지 D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6대여금 합계 838,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율 월 5%(제2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이율 월 1%)의 비율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D이 원고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을 이 사건 각 대여금에 충당한 결과 'D은 원고에게 783,723,671원 및 그중 685,543,703원에 대하여는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 되어 2022. 11. 18. 확정된 사실은 1.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성립 시기는 원고가 D 또는 피고들에게 각 대여금을 송금한 날이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그 성립 이후 이루어진 각 금원 지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2019. 7. 30.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행위는 이 사건 제2대여금채권을 성립시키는 행위이자 이 사건 제1금원 지급행위이므로, 이 사건 제2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제1금원 지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원고가 2019. 10. 2. 피고 회사에 합계 183,000,000원을 송금한 행위는 이 사건 제4, 5대여금채권을 성립시키는 행위이자 이 사건 제3, 4,금원 지급행위이므로, 이 사건 제4, 5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제3, 4금원 지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제1대여금 채권은 제1 내지 5 금원 지급행위에 대한, 제2, 3대여금 채권은 제2 내지 5 금원 지급행위에 대한, 제4 내지 제6 대여금 채권은 제5 금원 지급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의 제안으로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10일 단위로 원금의 3.2%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K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K와 피고 회사, E 사이의 삼각거래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불법적인 자금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의 대가 내지 일련의 불법행위의 연장선에서 교부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D이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돈은 원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판결에서 확정된 783,723,671원이 아닌 430,033,515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돈은 고리의 이자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련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바(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소송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라. D의 채무초과상태

1) 위에서 본 증거, 갑 제7 내지 8,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각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계좌의 잔액 합계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금원지급행위가 있었던 2019. 7. 30.경에는 11,300,281원, 이 사건 제2금원지급행위가 있었던 2019. 9. 2.경에는 19,650,149원, 이 사건 제3, 4금원지급행위가 있었던 2019. 10. 2.경에는 3,405,176원, 이 사건 제5금원지급행위가 있었던 2020. 1. 2.경에는 112,526,795원이었던 점, ② 금융기관의 제3채무자 진술서에 의하면 D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과 피고 B 사이의 이혼 조정조서와 D이 제출한 재산목록(갑 제18호증)에 의하면 D은 별도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             |
|----|------------------|------------|------------|-------------|-------------|
| 1  | 신한은행(계좌번호 3 생략)  | 174,602    | 247,952    | 80,617      | 160,110     |
| 2  | 신한은행(계좌번호 4 생략)  | 336,912    | 630,120    | 300,604     | 604,960     |
| 3  | 신한은행(계좌번호 5 생략)  | 10,167,715 | 18,710,109 | 1,004,209   | 1,241,678   |
| 4  | 신한은행(계좌번호 6 생략)  | 595,622    | 36,532     | 1,974,310   | 2,302,130   |
| 5  | 우리은행(계좌번호 7 생략)  | 25,430     | 25,436     | 25,436      | 25,436      |
| 6  | 우리은행(계좌번호 8 생략)  | 0          | 0          | 0           | 108,132,481 |
| 7  | 우리은행(계좌번호 9 생략)  | 0          | 0          | 20,000      | 60,000      |
| 8  | 우리은행(계좌번호 10 생략) | 0          | 0          | 0           | 0           |
| 합계 | 11,300,281       | 19,650,149 | 3,405,176  | 112,526,795 |             |

2) 한편 피고들은, D이 2019. 9.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서로 금융권의 대출을

진행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대출은 사업자의 실적이 증명되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2019. 12.경까지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D의 2019. 12.경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이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송금 등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 1 내지 4금원 지급행위에 관한 판단(소극) 갑 제5, 14, 16 내지 20, 24 내지 28호증, 을 제6,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4금원을 무상으로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4금원 지급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D은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회사가 K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5. 26.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892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F의 사업자이기는 하나 각 회사나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0. 10.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인천지방법검찰청 2020형제27855호), 피고 회사 및 F, G(이하 위 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업체들'이라 한다)는 모두 피고 B가 아닌 원고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 또는 사업체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제1, 2금원이 송금된 피고 B의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는 주로 D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업체들에 소속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게 대금을 지급하는데 주로 사용되었고, D에게도 주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되었는바, 위 피고 B 명의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D이 이 사건 각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사용·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제1금원 지급행위로 인해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에 1억 원이 송금된 직후 위 금원 전부가 F의 거래처인 L에게 송금되었고, 이 사건 제2금원 지급행위로 인해 피고 B의 우리은행 계좌에 39,000,000원이 송금된 직후 위 금원 전부가 F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M에게 송금되었다. 이러한 송금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금원은 D이 운영하는 F의 거래처에게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D이 무상으로 이 사건 제1, 2금원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제3, 4금원 지급행위로 피고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 합계 183,000,000원이 송금된 당일 185,513,100원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에게 송금되었다. 이러한 송금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4금원은 K와 피고 회사, E 사이의 삼각거래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D이 무상으로 이 사건 제3, 4금원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제5금원 지급행위에 관한 판단(적극) 가)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8, 10호증의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도 이 사건 제5금원 지급행위로 송금된 194,184,000원을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피고 B가 아닌 D인 사실이 밝혀진 이상 피고 B가 D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20. 3. 9. 당일 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인천가정법원 2020드단1493호), 2020. 8. 11. D이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제5금원을 무상으로 피고 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제5금원 지급행위는 피고 B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5금원 지급행위는 D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D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제5금원은 피고 B가 건물 구입을 계획하고 예치해 둔 돈을 D이 몰래 사용하였다가 이를 다시 송금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주장만으로 D이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194,184,000원 상당액을 몰래 출금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바.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84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업체들의 실제 운영자는 D이고, B는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빌리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제5금원 지급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증거, 갑 제10,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0. 3. 25.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2카단101819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B는 불과 며칠 전인 2020. 3. 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D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를 한 점, ② 피고 B는 D과 이혼한 이후인 2021. 3. 9.경에도 피고 회사로 출근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제5금원 지급행위 이전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 잔액은 37,988,229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 B는 위 지급행위 직후 100,000,000원을 출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제5금원 지급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제5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해행위가 금전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5금원 194,18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판사맹준영**

#### **판사김의기**

#### **판사류호정**